

## 다. 농업인조직체 영농현장 문제해결사업 지원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소득자원과(지도관 남윤우, 지도사 이준배, 031-229-5881~2)입니다.

### □ 목 적

- 농업인 생산자단체(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)들의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 지원으로 소득 증대 기여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하는 회원의 사기 진작으로 연구모임 활성화 추진

### □ 추진방향
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문제점 해소 및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과제 개발
- 농업인연구모임에서 개발된 기술(내용)중 회원 상호간 및 인근 농가에의 확대가 필요한 내용을 사업화 추진

### □ 근거법령 : 농촌진흥법 제2조 2항, 3항

### □ 사업대상
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, 품질개선, 브랜드 육성,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유통개선 등으로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

### □ 지원내역

- 사업량 : 3개소
- 사업비 : 300백만원(국비 150, 도비 100, 시군비 50), 개소당 100백만원
- 사업비 지원내역

구 분	사 업 명	예산액(백만원)			
		계	국비	도비	시군비
계	3개 사업	300	150	100	50
광주시화훼연구회	화훼 유통개선을 위한 집하장 설치	100	50	-	50
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	농산물 가공제품 용기개발 및 판매촉진	100	50	50	-
경기도콩연구회	경기콩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개선	100	50	50	-

## □ 추진체계

- 사업 주관기관 :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
- 선정절차 :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사업계획서를 도단위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
-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  - 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의 참여 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
  - 인·허가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
  - 사업변경, 사업포기 등이 있을 시에는 도농업기술원장(특·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)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  - 사업명 또는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후 추진
- 사업비 지원방법 :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
- 연구모임 교육 : 선정된 사업의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요령, 사업비 집행 방법, 관련기술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 실시

## □ 사후관리
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술지도 강화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계별 지도를 철저히 하고 기술 확산 도모
-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## □ 기대효과

-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애로기술의 공동 해결로 농업 경쟁력 제고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등 생산자 조직의 경제적 이익 증대

## □ 보고사항

-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 계획 : 2009. 1. 10

<보고양식>

**(사업명) 휴먼명조 18point**

※ 사업담당 : 00농업기술센터 00과 농촌지도사 000 전화(지역번호)000-0000

목 적 (15point)

- 목표치가 설정된 구체적인 목적 기술(14point)

연구모임 현황

- 대표자(전화번호) :
- 주 소 :

사업계획

- 기 간 :
- 규 모 :
- 사 업 비 :        백만원(국비        , 지방비        )
- 총사업비 투자계획

항 목	면적(규모), 단위	수 량	금액(천원)	비 고

- 사업내용(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)

-  
-

- 추진 순기표(세부 사업별)

세 부 추 진 내 용	추진 시기 (월)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												
○												

기대효과

- 기술적,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(추정)
-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 추진결과 : 2009. 11. 20

<보고양식>

1. 사업명 :

2. 연구모임명 :

3. 대표자 : (전화 : )

4. 주소 :

5. 추진실적

○ 예산

세부사업별	국비	도비	시군비
○ ○			

○ 사업내용

6. 기타 추진내용

○

7. 사업성과

○ 경제적 성과

○ 사업(기술) 확산 여부

○ 지역사회기여

8. 추진사례 홍보(관련자료 사진 첨부)